

의안번호	2213375
의 퇴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 계 번호	25E5398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(시나리오 ①)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1억 400만원에서 1억 5,0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6년 4,324억원 등 2026~2030년 총 2조 1,597억원(연평균 4,31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(시나리오 ②)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1억 400만원에서 1억 9,5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6년 8,566억원 등 2026~2030년 총 4조 3,043억원(연평균 8,60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(시나리오 ①)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5,000만원으로 인상	-4,324	-4,018	-4,217	-4,415	-4,623	-21,597	-4,319
(시나리오 ②)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9,500만원으로 인상	-8,566	-8,019	-8,417	-8,812	-9,228	-43,043	-8,609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	○ 간이과세 적용 대상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인상 - (현행) 8천만원~8천만원의 130% - (개정안) 1억 5천만원~1억 5천만원의 130%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최저 1억 5,000만원~최고 1억 5,000만원의 130%(1억 9,500만원) 범위에서 결정되므로,¹⁾ 최저 기준금액(시나리오 ①)과 최고 기준금액(시나리오 ②)에 대한 세수효과를 각각 추계함
 -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1억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음²⁾
- 세수효과는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의 개정 전(일반과세) 납부세액과 개정 후(간이과세) 납부세액 간 차이로 추정
 - 각 납부세액은 ‘과세표준 금액 × 실효세율(최종세액/과세표준)’로 추정함
 - 일반과세 납부세액 = 매출세액(공급가액³⁾ × 세율10%) - 매입세액 - 공제·감면세액
 - 간이과세 납부세액 = 공급대가⁴⁾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세율10% - 공제·감면세액
- 국세통계 자료(2024년 신고)를 활용하며, 업종별·과세표준 규모별로 구분하여 추계
 -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, 해당 업종별 사업자 자료를 활용함

1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1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.

2)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09조(간이과세의 적용 범위)

3)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

4)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

- 동 비용추계에서는 부가가치율로 구분된 업종을 다음과 같이 ①~⑤의 순번으로 표기함

[표 2]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현황

구분	업종	부가가치율
①	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음식점업	15%
②	제조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	20%
③	숙박업	25%
④	건설업, 그 밖의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	30%
⑤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)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	40%

자료: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1조

-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과세표준 집계 기준이 일치하도록 자료를 조정
 - 일반과세는 반기별로 신고·납부가 이루어지므로, 사업자가 매 기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1기 및 2기 자료를 합산
-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함⁵⁾
- 세수효과는 부가가치세수 증감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감할 것으로 가정
 - 부가가치세수 증감률 전망(NABO, 2025.10.)⁶⁾: 2025년 △0.7%, 2026년 6.1%, 2027년 5.6%, 2028년 5.0%, 2029년 4.7%
 - 2030년의 경우 2029년과 동일한 증감률 수준으로 가정함
- 다음과 같이 국세통계 자료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추계에 반영하지 못함
 -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매출 합산액으로 간이과세 전환이 결정되나 국세통계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수를 기준으로 집계되어 구분이 어려움
 - 신규·폐업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구분이 어려움
 -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시 상위 매출 구간에서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행동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자료로는 추정이 어려움
-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해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5) · 업종, 규모, 지역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(「부가가치세법」 제61조제1항제2호)
 : 광업, 부동산매매업, 제조업, 도매업, 부동산임대업, 전문직 사업자, 과세유흥장소, 소재 지역 및 사업의 종류·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,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등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2항)
 · 간이과세 포기(「부가가치세법」 제70조제1항)
 6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및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~2029」, 2025.10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5,000만원으로 인상 시 세수효과

(1) 간이과세 전환대상 과세표준

□ (전제) 개정안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대상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금액은 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 중 일부를 반영

○ 간이과세 배제(업종·지역·규모 등) 또는 포기 등의 이유로, 간이과세 기준 금액 이하 구간에도 일반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

□ (간이사업자 과표 금액의 비중) 2024년 현행 간이과세 구간의 비중과, 간이과세 전환대상 구간의 비중을 산출

○ 1억 400만원 이하 구간의 간이사업자 과표 비중은 업종별 14.2~54.0%

[표 3] 현행 간이과세 구간(~1억 400만원)의 간이사업자 과세표준 비중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일반사업자 과세표준(A_1) ¹⁾	136,774	66,132	5,601	220,707	276,109
간이사업자 과세표준(B_1) ²⁾	150,094	10,970	6,573	142,670	56,526
합계($C_1=A_1+B_1$)	286,868	77,103	12,175	363,377	332,635
간이사업자 비중($D_1=B_1/C_1$)	52.3	14.2	54.0	39.3	17.0

주: 1) 일반사업자 과세표준은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

2) 간이사업자 과세표준 자료는 공급가액(부가가치세 미포함) 기준으로 환산하여 활용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 구간의 간이사업자 과표 비중은 0.9~16.2%

[표 4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)의 간이사업자 과세표준 비중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일반사업자 과세표준(A_2) ¹⁾	128,122	41,131	3,645	174,745	65,903
간이사업자 과세표준(B_2) ²⁾	24,716	369	330	3,724	821
합계($C_2=A_2+B_2$)	152,838	41,500	3,975	178,469	66,723
간이사업자 비중($D_2=B_2/C_2$)	16.2	0.9	8.3	2.1	1.2

주: 1) 일반사업자 과세표준은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

2) 간이사업자 과세표준 자료는 공급가액(부가가치세 미포함) 기준으로 환산하여 활용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간이과세 전환대상 과표) 2024년 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 구간의 전체 과표 금액에, 간이과세 전환대상 과표 비중을 곱하여 추정
- 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 구간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더라도, 업종별 간이사업자 과표 비중이 1억 400만원 이하 구간의 비중(14.2~54.0%)과 동일할 것으로 전제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대상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추정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전체 과세표준(C_2)	152,838	41,500	3,975	178,469	66,723
전환대상 과세표준 비중($D_3=D_1-D_2$)	36.2	13.3	45.7	37.2	15.8
전환대상 과세표준($E=C_2 \times D_3$)	55,251	5,535	1,816	66,347	10,518

(2) 개정 전 납부세액: 일반과세 적용

- (실효세율) 2024년 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 구간의 일반과세 실효세율은 1.8~7.9% 수준

[표 6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)에서의 일반사업자 실효세율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일반사업자 과세표준(A_2) ¹⁾	128,122	41,131	3,645	174,745	65,903
일반사업자 납부세액(F) ¹⁾²⁾	2,306	2,109	104	8,714	5,207
일반과세 실효세율($G=F/A_2$)	1.8	5.1	2.8	5.0	7.9

주: 1) 일반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

2) 납부세액은 국세통계 상 차감납부할세액에서 차감환급할세액을 제외한 금액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연간 납부세액) 2024년 업종별 간이과세 전환대상 과표 금액에 일반과세 실효세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은 5,470억원으로 추정

[표 7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)의 일반과세 납부세액 추정(신고)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	
	①	②	③	④	⑤	합계
전환대상 과세표준(E)	55,251	5,535	1,816	66,347	11,177	140,127
일반사업자 실효세율(G)	1.8	5.1	2.8	5.0	7.9	—
개정 전 납부세액(H=E×G)	994	284	52	3,309	831	5,470

□ (추계기간 납부세액) 2026~2030년 총 3조 193억원(징수 기준)으로 추정
○ (신고 기준) 2024년 추정액에 부가가치세수 증감률 전망(2025.10.) 반영

[표 8] 현행 일반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(신고): 2025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개정 전 납부세액	5,432	5,765	6,085	6,391	6,693	7,010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○ (징수 기준)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납부 중 일부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, 당해연도 매출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기연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 반영

[표 9] 현행 일반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(징수)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개정 전 납부세액(J)	4,324	6,005	6,315	6,618	6,931	30,193	6,039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(3) 개정 후 납부세액: 간이과세 적용

- (실효세율) 2024년 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 실효세율은 0.1~2.8% 수준

[표 10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)에서의 간이과세 실효세율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간이사업자 과세표준(B_3) ¹⁾	27,188	406	363	4,096	903
간이사업자 납부세액(K)	24	5	5	78	26
간이과세 실효세율($L=K/B_3$)	0.1	1.3	1.4	1.9	2.8

주: 1) 간이과세 실효세율 산출 시, 과세표준 자료는 납부세액 자료와의 정합성을 위해 실제 과세표준인 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 기준을 활용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연간 납부세액) 2024년 업종별 간이과세 전환대상 과표 금액에 간이과세 실효세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은 1,885억원으로 추정

[표 11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5,000만원)의 간이과세 납부세액 추정(신고)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	합계
	①	②	③	④	⑤	
전환대상 과세표준(E)	55,251	5,535	1,816	66,347	11,177	140,127
간이과세 실효세율(L)	0.1	1.3	1.4	1.9	2.8	-
개정 후 납부세액($M=E^1 \times L$)	53	79	28	1,398	328	1,885

주: 1)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를 기준으로 하므로, 전환대상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(10%)를 더한 금액을 적용

- (추계기간 납부세액) 2026~2030년 총 8,596억원(징수 기준)으로 추정
○ (신고 기준) 2024년 추정액에 부가가치세수 증감률 전망(2025.10.) 반영

[표 12] 현행 간이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(신고): 2025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개정 후 납부세액	1,872	1,987	2,098	2,203	2,307	2,416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- (징수 기준)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다음연도 1월 1일~1월 25일에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

[표 13] 현행 간이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(징수)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개정 후 납부세액(N)	-	1,987	2,098	2,203	2,307	8,596	2,149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(4) 세수효과

-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400만원에서 1억 5,0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(지방소비세 포함)는 2026~2030년 총 2조 1,597억원(연평균 4,31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14]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5,000만원으로 인상 시 세수효과(징수 기준)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개정 전 납부세액(J)	4,324	6,005	6,315	6,618	6,931	30,193	6,039
개정 후 납부세액(N)	-	1,987	2,098	2,203	2,307	8,596	2,149
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세수효과(P=N-J)	-4,324	-4,018	-4,217	-4,415	-4,623	-21,597	-4,319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나.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9,500만원으로 인상 시 세수효과

(1) 간이과세 전환대상 과세표준

□ (간이사업자 과표 비중) 2024년 현행 간이과세 구간의 비중과, 간이과세 전환대상 구간의 비중을 산출

- 1억 400만원 이하 구간의 간이사업자 과표 금액 비중은 14.2~54.0%(위의 [표 3] 참고)
- 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 구간의 간이사업자 과표 금액 비중은 1.0~13.1%

[표 15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)의 간이사업자 과세표준 비중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일반사업자 과세표준(A_2) ¹⁾	263,625	80,262	6,941	341,730	112,337
간이사업자 과세표준(B_2) ²⁾	39,722	463	479	4,978	1,141
합계($C_2=A_2+B_2$)	303,347	80,725	7,419	346,708	113,478
간이사업자 비중($D_2=B_2/C_2$)	13.1	0.6	6.5	1.4	1.0

주: 1) 일반사업자 과세표준은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제외한 금액
 2) 간이사업자 과세표준 자료는 공급가액(부가가치세 미포함) 기준으로 환산하여 활용
 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간이과세 전환대상 과표) 2024년 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 구간의 전체 과표 금액에, 간이과세 전환대상 과표 비중을 곱하여 추정

- 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 구간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더라도, 업종별 간이사업자 과표 비중이 1억 400만원 이하 구간의 비중과 동일할 것으로 전제

[표 16] 개정안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대상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추정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전체 과세표준(C_2)	303,347	80,725	7,419	346,708	113,478
전환대상 과세표준 비중($D_3=D_1-D_2$)	39.2	13.7	47.5	37.8	16.0
전환대상 과세표준($E=C_2 \times D_3$)	118,994	11,022	3,527	131,147	18,143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개정 전 납부세액: 일반과세 적용

□ (실효세율) 2024년 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 구간의 일반과세 실효세율은 1.9~7.9% 수준

[표 17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)의 일반과세 실효세율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일반사업자 과세표준(A ₂) ¹⁾	263,625	80,262	6,941	341,730	112,337
일반사업자 납부세액(F) ¹⁾²⁾	5,006	4,134	211	16,861	8,856
일반과세 실효세율(G=F/A₂)	1.9	5.2	3.0	4.9	7.9

주: 1) 일반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

2) 납부세액은 국세통계 상 차감납부할세액에서 차감환급할세액을 제외한 금액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연간 납부세액) 2024년 업종별 간이과세 전환대상 과표 금액에 일반과세 실효세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은 1조 835억원으로 추정

[표 18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)의 일반과세 납부세액 추정(신고): 2024년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	
	①	②	③	④	⑤	합계
전환대상 과세표준(E)	118,994	11,022	3,527	131,147	18,143	140,127
일반과세 실효세율(G)	1.9	5.2	3.0	4.9	7.9	—
개정 전 납부세액(H=E×G)	2,259	568	107	6,471	1,430	10,835

□ (추계기간 납부세액) 2026~2030년 총 5조 9,812억원(징수 기준)으로 추정
○ (신고 기준) 2024년 추정액에 부가가치세수 증감률 전망(2025.10.) 반영

[표 19] 현행 일반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(신고): 2025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개정 전 납부세액	10,760	11,421	12,055	12,661	13,260	13,887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- (징수 기준) 당해연도 매출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기연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 반영

[표 20] 현행 일반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(징수)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개정 전 납부세액(J)	8,566	11,896	12,510	13,110	13,730	59,812	11,962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(3) 개정 후 납부세액: 간이과세 적용

- (실효세율) 2024년 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 실효세율은 0.1~2.9% 수준

[표 21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)에서의 간이과세 실효세율: 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
	①	②	③	④	⑤
간이사업자 과세표준(B_3) ¹⁾	43,694	510	527	5,476	1,255
간이사업자 납부세액(K)	38	6	8	106	36
간이과세 실효세율($L=K/B_3$)	0.1	1.3	1.4	1.9	2.9

주: 1) 간이과세 실효세율 산출 시, 과세표준 자료는 납부세액 자료와의 정합성을 위해 실제 과세표준인 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 기준을 활용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연간 납부세액) 2024년 업종별 간이과세 전환대상 과표 금액에 간이과세 실효세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은 3,678억원으로 추정

[표 22] 개정안 대상 구간(1억 400만원~1억 9,500만원)의 간이과세 납부세액 추정(신고): 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업종					합계
	①	②	③	④	⑤	
전환대상 과세표준(E)	118,994	11,022	3,527	131,147	18,143	140,127
간이과세 실효세율(L)	0.1	1.3	1.4	1.9	2.9	-
개정 후 납부세액($M=E^1 \times L$)	113	153	56	2,784	572	3,678

주: 1)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)를 기준으로 하므로, 전환대상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(10%)를 더한 금액을 적용

□ (추계기간 납부세액) 2026~2030년 총 1조 6,769억원(징수 기준)으로 추정

○ (신고 기준) 2024년 추정액에 부가가치세수 증감률 전망(2025.10.) 반영

[표 23] 현행 간이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(신고): 2025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개정 후 납부세액	3,653	3,877	4,092	4,298	4,501	4,714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○ (징수 기준)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다음연도 1월 1일~1월 25일에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

[표 24] 현행 간이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(징수)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개정 후 납부세액(N)	-	3,877	4,092	4,298	4,501	16,769	4,192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(4) 세수효과

□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400만원에서 1억 9,5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부가가치세(지방소비세 포함)는 2026~2030년 총 4조 3,043억원(연평균 8,60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25]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9,500만원으로 인상 시 세수효과(징수 기준)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개정 전 납부세액(J)	8,566	11,896	12,510	13,110	13,730	59,812	11,962
개정 후 납부세액(N)	-	3,877	4,092	4,298	4,501	16,769	4,192
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세수효과(P=N-J)	-8,566	-8,019	-8,417	-8,812	-9,228	-43,043	-8,609

주: 지방소비세 포함 금액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